### [공고번호 제2025-03호]

# 2025년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

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하고자 「'25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3월 10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

# │. 사업개요

## □ 추진목적

- 충북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
-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
- □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4개월(1개월 연장 가능)
- □ 사업내용 :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
- □ 총괄기관 : 충청북도 및 11개 시·군
- □ 수행기관 :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

# Ⅱ. 지원대상

## □ 신청자격

-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별표3\*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\*[첨부-1] 지원대상 소기업(제조업에 한함) 규모 기준 참고
   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

#### □ 선정방법

- 사업신청서 접수 후, 사전평가(서면·현장)를 통해 선정
  - 충북도 내 11개 시ㆍ군 예산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수 상이
  - 제출된 사업 신청서로 지원제외 여부 확인
    - \* 지원 제외대상
      - · 휴·폐업중인 기업

- 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· 유흥·향락업. 숙박·음식점
- ·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\*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
-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  - ※ 요청한 증빙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며, 증빙서류 부적합 및 미제출시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함
  - ※ 공고문 내 평가기준을 참고하며. 가점사항을 유의할 것
- '23년 , '24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-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'을 수행중이거나, '25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(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는 사업 신청 가능)

# Ⅲ. 지원내용

#### □ 구축목표 현황

No	지 역	구축목표
1	청주시	15
2	충주시	4
3	제천시	2
4	보은군	1
5	옥천군	2
6	영동군	1
7	증평군	1
8	진천군	5
9	괴산군	1
10	음성군	6
11	단양군	1
총계(개사)		39

### □ 총사업비 : 기업당 평균 30,000천원

- 지자체 지원금 : 총사업비의 90%, 최대 27,000천원 (충북도 13,500천원, 시·군 13,500천원)
- 기업 자부담금 : 총사업비의 10%, 최소 3,000천원 (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)
  - \*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
  - \*\* 총사업비 30,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- 예시) 지원금액 27,000천원(90%) + 기업자부담금 3,000천원(10%) = 총사업비 30,000천원

### □ 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기반 "생산자동화 장비/설비, IT시스템" 구축비 지원
  - 도입기업-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회, 현장점검을 거쳐, 3자 협약(충북테크노파크-도입기업-공급기업) 진행

### [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]

분 야	상세내용
	- 품질관리 : 불량등록, 초중종물관리, SPC분석, LOT추적
ICT연계 간이	- 생산관리 : 생산계획 등록, 생산실적 관리, 생산지시
생산시스템	- 출하관리 : 출하계획 등록, 출하현황, 창고재고관리
	- 공정관리 : 작업일보 관리, 공정현황모니터링 등
	- 공정/설비의 디지털 전환
	* 가공(조립) 자동화 : 1인셀, 블록셀, 자동공급장치, 포장기, 협동 로봇
제조공정 설비	* 물류자동화 : AGV, 창고관리시스템
제소등성 설비 DX 전환지원	* 검사자동화 : 비전검사기
DX 신완시원	* 모니터링자동화: 이물·온습도, 정전기(ESD), 진동, 소음, 조도 등
	- 기존 노후화된 제조공정/설비의 디지털 전환 지원
	* 기존설비에 센터, 네트워크, SW 등 디지털 기술을 추가하여 성능향상
	- 환경 :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(누액, 누수)
ESG 경영지원	- 소방 : 열화상 감지시스템, GAS 모니터링 시스템
(환경안전	- 보건 : 환기 시스템,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
	- 안전 : 위험기계/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
시스템)	※ 단, 도금공정/분진발생공정/위험물사용공정 등
	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

# Ⅳ. 신청절차 및 방법

## □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

① 서면평가 → ② 현장평가 → ③ 최종선정

 구 분	서면평가	현장평가	최종선정
	<ul> <li>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계획의 적절성 등 여부를 서면 방식으로 평가</li> </ul>	·서면평가 통과대상으로 사 업계획서와 일치 등 여부 를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	∘현장평가 최종점수 및 현 장확인 특이사항 등을 고 려하여 최종선정
선정절차 및 방법	○서면평가 점수(100%를 반 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가 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로 산정하여 구축지원목표의 1.5배수를 선발	<ul><li>현장평가 점수(100%)를 반영한 고득점 순으로 구 축지원목표의 1배수를 선 발</li></ul>	∘ 선정·탈락 여부 통보

<sup>\*</sup>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과제로 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기준

○ ① 서면평가 :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, 계획성 등을 평가

	평 가 항 목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사업 추진 필요성 및	∘ 지원기업의 제품 또는 공정현황(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	8	6	4	2
계획의 적정성	∘ 지원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제품 또는 공정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	8	6	4	2
(30)	◦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및 가능성	10	8	6	4	2
목표달성	◦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고,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	8	6	4	2
및 기대효과	∘ 구축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품 또는 공정의 스마트化 결과 활용도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가?	10	8	6	4	2
(30)	◦활용계획(제품화 또는 사업화), 기대효과 등이 타당한가?	10	8	6	4	2
사후관리	∘구축 이후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 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등이 타당한 가?	10	8	6	4	2
(15)	◦ 협약종료 후 지속적 활용 방안 적정성	5	4	3	2	1
운영관리	∘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적합성은 타당한가?	10	8	6	4	2
(15)	∘ 부정수급 및 위반사항 발생방지 계획의 적합성	5	4	3	2	1
일반현황	◦충북에 본사가 있는 공급기업과 매칭하였는가? [충북 5점 / 타지역 2점]	5 2				
(10)	◦본사 소재지가 충북에 위치하였는가? [충북 5점 / 타지역 2점]	] 5 2				
	소 계(100)					
평가가점	◦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					
(5)	· 사업계획서상 스마트제조표준 달성여부					
· 우리기밥, 여성기밥, 성애인기밥  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
소 계(5)						
	총 점(105)					

<sup>\*</sup>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# 가점 항목

(관련 가점 해당 기업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)

가점항목	평가기준 및 제출서류
스마트제조 표준	·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(AAS, OPC-UA 등)
	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)
중소기업 스마트화	·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컨설팅을 받은 기업
역량강화 컨설팅	* 증빙자료 제출 필수(협약서)
뿌리, 여성,	· 뿌리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중 확인서를 받은 기업
장애인기업	* 증빙자료 제출 필수(확인서)

<sup>\*\*</sup> 동점 과제는 가점 제외한 총점, 적성성, 기대효과, 운영관리, 사후관리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

### ○ ② 현장평가 :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및 참여 의지 등 현장 확인

평 가 항 목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사업 참여의지 및 이해도	∘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 시하였는가?	10	8	6	4	2
	∘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	4	3	2	1
(35)	∘지역 및 업종 상황을 고려한 분명한 사업지원의 동기	10	8	6	4	2
	∘ 지원기업의 적극성 및 참여의지 정도	10	8	6	4	2
추진계획	◦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도	5	4	3	2	1
및	∘ 구축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	10	8	6	4	2
목표설정 타당성 (25)	·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 집: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 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	8	6	4	2
구축 내용 적절성 (15)	∘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	8	6	4	2
	·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5	4	3	2	1
목표달성 가능성 (25)	○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–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 액 등의 적절성)	10	8	6	4	2
	∘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 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	8	6	4	2
	$\circ$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	4	3	2	1
총 점(100)						

<sup>\*</sup> 동점 과제는 타당성, 가능성, 적절성, 이해도,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

# ∨.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Ⅵ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# 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**(신청기간)** 2025년 3월 10일(월) ~ 2025년 4월 4일(금) 17시 까지(예정)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)
   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예정이며,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모집종료 할 수 있음
    - ※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공급 기업 풀 공지 참조)

#### □ 제출서류

○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#### <온라인 등록 서류>
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및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
-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2023년, 2024년) 각 1부
  - \*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
  - \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
- 소기업확인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- \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
- 도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각 1부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- 참여의사확인서
- 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 동의서

#### □ 문의처

○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(T: 043-270-2814 / E: sypark@cbtp.or.kr)

# Ⅷ. 기타사항

- "2025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"은 중소벤처기 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수행한(~24년)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(신청일 기준 집중AS기간인 경우 사업신청 가능. 단, 스마트공장(동일수준) 사업을 진행한 경우 는 신청불가)
-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,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
- ㅇ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

사업신청, 용역, 구매,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,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(재)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(043-270-2901~2)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.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.